

[일련번호 : 6]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혼용 및 발생이자 정산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조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제10조에 따라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또는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시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자는 '1.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2. 폐지 승인 시 3. 회계연도 종료 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

적보고서(정산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르면,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환토록 조치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약정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3년 ○○○○○ 차량구입을 위한 보조금(4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해야했음에도, 타 부서(A과)의 타 사업(2023년 \*\*\*\* \*\* 지원사업)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하여 두 개의 다른 부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발생이자가 혼재되어 관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정산 시 각 사업의 발생이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실적보고서에 ‘발생 이자는 A과에서 제외수입 처리 예정(동일한 보조금 통장)’으로 기재하여 차량구입 보조금은 발생이자 반납 없이 집행 잔액(2,103,300원)만 반납되었다.

또한 해당 보조사업은 차량 및 블랙박스 구입으로 2023. 9. 7. 완료되었으나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정산서)를 제출받지 않고 2024. 1. 31. 지연하여 정산 처리하였다.

[표] 보조금 집행 정산 소홀내역

일자	건명 및 내용	지적사항
2023.03.22.	A과 → ○○○○○ - **** **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원)	
2023.09.04.	□□과 → ○○○○○ - 차량 구입 보조금 교부 (40,000,000원)	타 사업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2023.09.04. ~09.07.	○○○○○ - 차량(**,***,***원) 및 블랙박스(**,***원) 구입	보조사업 종료되었음에도 2개월 이내 실적 및 정산보고 미실시
2023.12.27.	A과 - **** **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완료 (집행잔액 **,***원, 이자 *,***원 반납)	
2024.01.23.	○○○○○ → □□과 - 차량구입 보조금 집행잔액 *,***,***원 반납	('23.12.27.~'24.1.23. 기간 이자 발생 내역 확인 불가, 현재 통장 부재)
2024.01.31.	□□과 - ○○○○○ 차량구입 정산보고 (집행잔액 *,***,***원 반납, 발생이자 A과에서 처리 예정으로 기재)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이자 미정산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